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2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신현영·고용진·김병욱

김정호 · 이형석 · 허종식

김성주 · 홍정민 · 오영환

박 정ㆍ서영석ㆍ양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9조의3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접촉자 격리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은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자만으로 되어 있음. 접촉자 외에 감염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시설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해외 입국자 등 감염병의심자를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정 근거가 미흡함.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정 근거도 없는 상황임.

이에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함과 동시에 감염병 검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의3제1항).
-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1 호의2).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의 제목 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감염병환자등의접촉자를"을 "감염병의심자를"로,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접촉자"를 각각 "감염병의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검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검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의2 중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검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 제39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설 지정 등) ①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의심자를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감염병의심자----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 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감염병의심자---지정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 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 ----- 감염병의심자-----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 ----- 감염병의심자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 감염병의심자<u>----</u>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 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 - 감염병의심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신 설> 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 촉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 제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생략)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u>접촉자</u> <u>격리시설</u>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검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할
<u>수 있다.</u>
<u>④</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
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검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70조(손실보상)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u>감염병</u>
의심자 격리시설 및 감염병
의심자 검사시설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